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10호 2021. 6. 28.(월)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예천군 훈령 제432호)

고 시

-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1-46호)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47호)

공 고

- 예천군금고 지정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1-870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32호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천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 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연차별·임기 내 목표와 이행 내용
3. 연도별 재정 투자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5. 국가 및 경상북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6.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점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단의 구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반 군민들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3.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평가단 구성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항 추진 모니터링
3.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4.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
5.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0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

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 평가단의 수당 등)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약사항의 변경) ① 군수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약사항의 변경 시 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변경된 공약사항을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4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별표]

공약이행도 및 완료사업의 판단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약이행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제정 및 입법 완료)

나.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현재까지의 실적
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

다. 정상추진 :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
료가 예상되는 사업

라. 일부추진 :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마. 보류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바. 폐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 중장기사업의 경우 임기 내 최종 목표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이
행도를 구분

2. ‘완료사업’은 각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가. 조성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개시

나. 건설사업(SOC 도로 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개시

다.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라.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마.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 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제정이유

예천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체계(제3조)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

나. 실천계획의 수립(제4조)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개

다. 자체점검(제7조)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라. 공약이행 평가단의 구성·역할·운영(제8조, 제9조 및 제10조)

- 공약이행 평가단은 일반 군민들로 공개모집하여,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 등 평가단의 역할을 규정
-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공약사항 이행여부는 서류를 근

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음

마. 공약사항의 변경(제12조)

- 공약사항의 변경 시 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변경된 공약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

바. 평가결과의 공개 및 군민 의견수렴(제13조 및 제14조)

- 공약사항의 확정·실천계획·수정 및 변경·추진상황·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에 따라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8.

예 천 군 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와 관련 제반 사무를 수행하며,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협의회 가입의 자격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에 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전임자의 유고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장은 회의 개최가 결정될 경우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알리도록 한다.

제11조(회의장소) 회의장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는 안전에 따라 참석자를 담당과장 또는 국장으로 지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주관은 참석자의 차상위 직위자로 한다.

제4장 회 계

제13조(회계연도) 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 추진 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인사용) 협의회 및 협의회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인 및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2차)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예 천 군 수

1. 사업명칭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10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세한종합건설 권기윤
나. 주 소 : 경북 안동시 광명로 169, 401호(옥동,트윈빌딩)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10
4.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

총 사업면적 (㎡)	승 인 내 용 단위:㎡)			비고
	대지조성(세부)면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5,249 (변경없음)	단독주택부지 (21필지)	11.948.00 (필지별332.00 ~ 986.00)	11,998.60 (필지별398.50 ~ 922.30)	
	단지내 도로	2,836.00	2,784.50	
	자전거거치대 및 공동보관소 (1필지)	465.00	465.90	· 쓰레기분리 및 공동보관소 · 공용주차장 등

(비고) 시설물 설치(변경) :

* 대지경계용 헨스변경 설치[H1.2*B2.0(감) : 376.5m→196.5m, H0.5*B2.0(증) : 0m→180m]

* 잡석포설변경(0.0㎡ → 400㎡, 쓰레기분리 및 공동주차장 부지)

5. 사업시행기간 : 2021.04.15 ~ 2022. 06. 30

6. 다른 법률의 의제 주요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는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예천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예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예 천 군 수

1. 금고지정 결과

- 지정금고 : NH농협은행(주) 예천군지부
-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약정기간 : 2022. 1. 1. ~ 2025. 12. 31.(4년)

3. 기 능

-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각종 세입금의 수납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기타 군수가 금고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